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削除를 하고, 新設은 “地方債 發行으로 造成된 資金은 議會의 議決을 얻은 事業에 한하여 使用한다” 또 第9條 一時借入金 「시장은 기금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기타 용자기관으로부터 용자를 일시차입 할 수 있다」를 削除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第2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년도에 상환하여야 한다」도 削除합니다.

그 다음 第10條 財政投融資基金運營審議會의 設置 해서 第1項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재정투융자기금 운영심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第2項 「심의회는 심의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조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第3項은 「기금의 용자대상 사업의 선정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이것 맞잡아요?

○金炯奎委員 아니지요. 1項 1號, 2號, 3號, 4號가 있고……

○李秉守委員 1項에 1號, 2號, 3號, 4號가 있고……

○委員長 朴尙東 1項에 참 1號, 2號, 3號. 그레요 3號, 2號가 아까 바뀌었습니다. 1項이 아니고, 3號 “審議會는 審議 및 議決事項에 대하여 會議錄을 作成 備置하여야 한다” 이것 1項 3號 아닙니까?

○金炯奎委員 1項 審議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1項은 끝이지요. 2項에 가서 “審議會 構成 運營 등의 事項은” 3項으로 하고, 2項에다 “審議會는 會議錄을 作成 備置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委員長 朴尙東 2項에 “審議會의 構成·運營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 이것은 그냥 두고…….

○金炯奎委員 그것을 3項으로 하고…….

○委員長 朴尙東 3項으로 하고 그 다음에 “審議會는 審議 및 議決事項에 대하여 會議錄을 作成 備置하여야 한다” 이것을 2項으로

하자?

○金炯奎委員 그레야 條文 整理가 되지요.

○委員長 朴尙東 그 다음에 第3條 “水害復舊融資 등을” 削除하고 “地域經濟 活性化 등을” 挿入, “低所得層에 대한 傳貫金 融資 및 地域經濟 活性化 등 市民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特殊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의 融資”이렇게 原案을 訂正을 했습니다.

이것을 崔明鎧委員과 金炯奎委員께서 이 內容을 原案에서 變更한 內容을 動議해 주었습니다. 再請 있습니까?

(「네」하는 委員 있음)

三請 있습니까?

(「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죠?

(「네」하는 委員 있음)

感謝합니다.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조성 및 지역개발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자원) ①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이나,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으로부터 예수금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증출연금(현물출자를 포함한다)
4.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 및 예수금
5. 정부지원금 및 용자금

<p>6.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7. 용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8.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p> <p>②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중 일정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하철·도시고속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li> <li>2. 상수도사업특별회계·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등 특별회계및 타기금에 대한 용자</li> <li>3. 구·동청사, 구민회관등 자치구의 영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용자</li> <li>4.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금 용자및 지역경제 활성화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용자</li> <li>5. 지방채·예수금 및 차입금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li> <li>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li> </ol>	<p>산의 범위안에서 예탁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p> <p>제6조(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등의 잉여금 및 현물의 출연·출자)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나 기금의 잉여금 및 현물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p> <p>제7조(자치구로부터의 예탁 및 적립) ①자치구는 자치구의 기본재정수요에 충당하고 여유가 있는 재원의 일부를 자치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기금에 예탁 또는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되거나 적립된 재원은 자치구의 영선사업 비용으로만 이를 용자할 수 있다.</p> <p>제8조(지방채의 발행) ①시장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5조(특별회계등의 여유자금의 우선예탁)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 및 기금은 당해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년 이상의 여유가 있는 자금을 이 기금에 예탁할 수 있으며, 당해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기금의 총지출에</p>	<p>제9조(재정투융자기금운영심의회 설치)①기금의 합리적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재정투융자기금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금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li> <li>2. 기금의 용자대상사업 선정 및 규모결정에 관한 사항</li> <li>3. 이자율·상환방법등 용자조건에 관한 사항</li> <li>4.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사항</li> </ol> <p>②심의회는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委員長 朴尙東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8時 03分 散會)

○出席委員

朴尙東	李聲九	蘇中天
全潤杓	孟今龍	柳準向
車在國	李秉守	李敏國
俞相根	崔明鎭	金炯奎

○專門委員

安錫洙

○出席公務員

企劃管理室長	朴宗雨
市政研究官	康泓彬
投資管理官	金益洙
企劃擔當官	金光市
豫算擔當官	金禹爽
市政開發擔當官	李哲秀
法務擔當官	陳翼喆